형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627 발의연월일: 2024. 8. 7.

발 의 자:김선교・구자근・서지영

김성원 • 윤상현 • 서천호

김예지 • 박준태 • 박정훈
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, 적국이 아닌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는 다른 법률을 통해 처벌해야 하는 상황임.

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 및 포괄적 안보개념 대두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'적국'의 개념이 모호해지고, 적대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, 간첩죄의 적용범위에 '외국' 및 '외국에 준하는 단체'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.

이에 적국을 위한 간첩과는 별도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98조 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第98條(間諜) ①・②(생 략)	第98條(間諜) ①・② (현행과 같		
	승)		
<u> <신 설></u>	③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		
	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는 5년		
	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		